

2018. 1.

---

『2018년도 농업분야』  
**주요사업 지원계획**

---

**Jeju**

제 주 시  
[농 정 과]



# ||| 목 차 |||

□ 일반 현황 .....	1
□ 2018년 농업분야 비전/목표/전략과제 .....	3
□ 2018년 농업분야 예산 현황 .....	4
□ 2018년 주요사업 지원계획 .....	7
 <b>【농정 분야】</b> .....	 <b>9</b>
1. 농업성공대학 운영지원 .....	9
2.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포럼 운영비 지원 .....	10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11
4. 농어촌진흥기금 용자 지원 .....	12
5.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13
6.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14
7.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사업 .....	15
8.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	16

<b>【감귤 분야】</b> .....	<b>17</b>
1. 기타과수 고품질 생산기반시설 지원 .....	17
2.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지원 .....	18
3.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 .....	19
4. 감귤 우량품종갱신 지원 .....	20
5.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	21
6.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	22
7. 감귤원(하우스, 노지) 관수시설 지원 .....	23
8. 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 .....	24
9.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 .....	25
10.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 지원 .....	26
11.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	27
12.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 .....	28
13.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 .....	29
14.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	30
15. 감귤하우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지원 .....	31
16.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 .....	32
17. 친환경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시설 지원 .....	33
18. 과수원정비용 파쇄기 지원 .....	34
19.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 .....	35
20. FTA대응 감귤원 성목이식 지원(3년차사업) .....	36

21.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 .....	37
22. 감귤 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 .....	38
23.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	39
24.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 .....	40

**【식품산업 분야】 .....** **41**

1.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 .....	41
2.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 .....	42
3. 제주석창포 지역 활성화 사업 .....	43
4.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44
5. 밭농업 직접지불제 .....	45
6.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46
7.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	47
8.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48

**【원예특작 분야】 .....** **49**

1.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49
2. 친환경농산물 소득기반 특별지원(도예산) .....	50
3.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도예산) ..	51
4.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지원사업 .....	52

5.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	53
6.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 .....	54
7. 수출용화훼(백합)종구 구입비 지원 .....	55
8.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	56
9.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비상발전기, 온풍난방기 등) 지원 사업 .....	57
10. 기후변화 대응(열대아열대) 특화소득 작물육성 사업 .....	58
11. 친환경비료(발효액비 등)지원 사업 .....	59
12.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	60
13.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 .....	61

**【유통지원 분야】 .....** **62**

1. 경작지 암반 제거 사업 .....	62
2. 발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	63
3.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	64
4.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	65
5. 발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	66
6.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	67
7.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	68
8.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	69
9.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	70

1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71
11.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72
12.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	73
13.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 .....	74
<b>【농지관리 분야】 .....</b>	<b>75</b>
1. 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	75
2. 2018년도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	76
<b>□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b>	<b>77</b>





# 일 반 현 황

## 1 기구 및 정·현원

### ○ 기 구



### ○ 정·현원

구분	계	일반직							공무직	비고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27	26	1	1	6	5	8	5	1	
현원	27	26	1	1	7	6	6	5	1	

### ○ 담당별 주요업무

담당별	주요업무	비고
농정담당	○ 농림축산식품사업 총괄, 농업인 단체 육성 ○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인 복지 등	
감귤담당	○ 과수산업 육성 총괄, FTA기금 지원사업 총괄 ○ 감귤 유통, 고품질 감귤 생산, 기타과수 지원 등	
식품산업담당	○ 향토산업·외식업 지구·식품산업 육성, 해올렛공동브랜드관리 ○ 직접지불사업(조건불리, 발농업, 경관보전 등)	
원예특작담당	○ 친환경농업·원예특용작물 육성 지원 ○ 생산시설 및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등	
유통지원담당	○ 농산물 수출·유통 진흥 업무 전반 ○ 농업재해, 농기계 지원 등	
농지관리담당	○ 농지관리, 농업법인 사후관리, 농지전용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농어촌민박, 후계농업인력 육성 등	

## 2

## 일반농업 현황

### < 제주도 농업 ('16) >

- 농가·인구수 : 33,109가구·88,385명(도전체인구 661,190명의 13.4%)
- 농가소득 : 45,842천원(전국1위) ※ 부채 63,963천원(전국1위)
- 경지면적 : 62,140ha(밭 62,123ha/99.97%, 논 17ha/0.03%)  
※ 전국 경지면적 1,643,599ha(밭 747,860ha/논 859,739ha)의 3.78%

### □ 농업 세력( '16년)

- 농업조수입 : 7,182억원 ※ 도 전체 17,624억원의 40.8%
- 농업인구 : 19,177호·53,395명 ※ 도 전체 33,385명의 60.4%
- 경지면적 : 31,164ha(밭 31,159, 논 5) ※ 도 전체 62,140ha의 50.2%
- 농기계보유 : 8종·16,246대(경운기 7,487, 관리기 5,003, 기타 3,756)

### □ 과수분야( '16년)

- 감귤 : 10,568농가·6,771ha(노지 5,883, 가온 16, 월동 424, 만감류 530)
- 기타과수 : 438농가·243ha(참다래 118, 단감 64, 매실 26, 기타 35)
- 감귤선과장 : 145개소(농협 33, 감협 37, 유통인 55, 영농법인 20)⇒ 17.12월기준

### □ 밭작물분야( '16년)

- 식량작물 : 8,523농가·8,589ha(콩 3,814, 가장 1,178, 감자 644, 메밀 727, 보리 1,900, 기타 326)
- 월동채소 : 12,714농가·8,058ha(양배추 1,744, 월동무 1,331, 당근 1,240, 기타 3,743)
- 원예전문생산단지 : 4개소(화훼 2, 과채 2)
- 친환경농업지구 : 21개소(한림 2, 애월 7, 구좌 5, 조천 3, 한경 2, 동지역 2)  
- 친환경인증 : 700호·1,132ha(유기 601, 무농약 531)

### □ 유통시설( '17년)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15개소(농협 12, 영농법인 3)
- 친환경농산물전문판매장 : 27개소(농협 3, 대형매장 8, 초록마을 8, 생협 5, 기타 4)

# 2018년 비전 / 목표 / 전략과제

**비전**

**강한 1차산업,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목표**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강한 미래농업 육성**

## 전략과제

## 실행계획

① 기후변화 대응 특화품목 육성 및 시설원예생산기반 확충

- ① 기후변화 대응 다양한 열대·아열대 특화 소득작목 육성
- ②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 확충 → 발작물경쟁력 강화

② GAP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작지만 강한 친환경농업 육성

- ① 청정제주 브랜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 ②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자재 지원

③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강화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 ①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육성
- ② 농업·농촌 자원의 명품 브랜드 강화

④ 안정적인 농소득 창출을 위한 고품질 과수 인프라 구축

- ① FTA 대응 과수 연중 생산기반 확충
- ② 과수 생산·유통체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⑤ 전천후 농산물 유통 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한 농업 육성

- ① 신선농산물 유통기반 안정화 추진
- 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비촉진 강화

⑥ 농작업 인건비 절감 등 효율적인 발작물 영농기반 조성

- ① 농작업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강화

⑦ 살고싶은 농촌만들기를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 및 역량강화

- 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 ② 급변하는 농업환경 대처를 위한 농업인 역량 강화

⑧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직접지불제사업 확대 지원 추진

- ①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직접지불금 지원 강화

⑨ 제주농지기능강화 완성을 위한 '경자유전' 원칙 강력 추진

- ①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농지 취득이용 등 관리 강화

# 2018년 농업분야 예산 현황

## 1 예산 총괄

○ 2018년 예산액 : 43,920백만원(국비 17,579, 도비 26,341)

-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1,223,161백만원)의 3.6%
- 전년(2017년) 본예산(43,720백만원) 대비 200백만원(0.5%) 증가

## 2 재원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예산액 (본예산)	2017 예산액 (본예산)	2017년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43,920	43,720	200	0.5	
국비	소 계	17,579	19,101	-1,522	-8.0
	국 고	11,268	10,917	351	3.2
	지 특	2,512	3,692	-1,180	△-32.0
	기 금	3,799	4,492	-693	-15.4
도비	소 계	26,341	24,619	1,722	7.0
	자 체	15,039	11,965	3,074	25.7
	도비부담	11,302	12,654	-1,352	△-10.7

## 3

## 단위사업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A)	전체예산 대비(%)	예산액(A)	전체예산 대비(%)		
계	43,920	100	43,720	100	200	0.5
친환경농정 추진 및 농업인 복지 증진	2,233	5.1	4,068	5.1	-1,835	-45.1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11,070	25.2	9,048	25.2	2,022	△22.3
식품산업 진흥	672	1.5	1,696	1.5	-1,024	△-60.4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22,004	50.1	20,801	50.1	1,203	△5.8
유통지원 및 발작물 경쟁력 강화	7,555	17.2	7,759	17.2	-204	-2.6
농지보전 및 관리	313	0.7	275	0.7	38	순증
기본경비	73	0.2	73	0.2	0	0.0



# 2018년 주요사업 지원계획

## 〈 일 러 두 기 〉

- 본 책자는 제주시가 2018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추진 예정인 농업 분야 주요사업 지원계획으로서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안내를 위해 작성한 참고자료입니다.

### ※ 유의사항

: 향후 중앙부처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사업지침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일정, 예산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농정분야 ]

### 1 농업성공대학 운영지원

- ❖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FTA 대응 방안 모색 및 농업소득 향상 추진
- ❖ 수요자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수요 충족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 □ 사업내용

- 운영기간 : 2018. 3월 ~ 11월
- 교육인원 : 600명(농협별 60명 × 10개 농협)
  - 교육대상 : 제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 사업비 : 286,000천원(도비 200,000 자부담 86,000)
- 운영주체 : 제주시, 농협지역본부, 지역농협(10개 농협)
- 교육장소 : 지역농협(농협회의실 등 활용)
- 교육운영 : 연간 25주(총 50시간) - 매주 1회(2시간)
  - 교육내용 : 농업경영, 농업 마케팅, 농업기술교육 등
  - 강사선정 : 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선도 농업인 등

#### □ 신청방법 및 절차

- 수강신청기간 : 2018. 3월 ~ 4월
  - ※ 신청기간 별도 공지(신문, 언론 등)
- 신청접수장소 : 지역농협
  - 지역농협에 비치된 수강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농정담당(☎ 728-3311, 3313)

농협제주지역본부(☎ 720-1224) 및 각 지역농협

## 2

##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포럼 운영비 지원

- ❖ 귀농·귀촌인들이 제주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성공적 정착유도와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 민간 주도의 지역 농업·농촌포럼 활동비 지원으로 지역별 특성에 걸맞은 농업·농촌의 문제들을 토론함으로써 농촌의 발전방향 모색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4조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 포럼 운영 1식
- 사업비 : 22,230천원(도비 20,000, 자부담 2,230)
- 지원대상 :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 사업내용 : 포럼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 포럼 구성 : 시, 읍·면·동 단위 농업인단체 중심으로 구성
  - 포럼 참여 : 제주시 농업인(귀농·귀촌인),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

### □ 추진일정

- 포럼운영계획 수립 : 2018. 1월
- 시·읍면동 단위 포럼 구성 : 2018. 2월
- 포럼운영비 지원 : 2018. 2월
- 포럼운영 : 2018. 2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농정담당(☎ 728-3311, 3313)

###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 16개 경영체(후계농·귀농인 8, 농업법인 8)
- 사업비 : 320백만원(국비 128, 도비 32, 자부담160)
- 사업대상 : 후계농업인, 귀농인, 농업법인, 조직경영체
- 지원단가(자부담 포함) : 농업인 10백만원, 법인 20 ~ 50백만원  
\* 법인의 경우 경영체 단계별 차등 지원(백만원) : 기초 20, 전문 30, 혁신 50
- 사업내용 : 경영 및 마케팅관리, 기술개발 등 컨설팅업체 자문비용 일부(50%)지원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7. 11. 20. ~ 12. 14.(접수완료) ※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신청자 : 전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및 법인체
- 대상자 확정 : 2018. 2월
  - (개인경영체) 제주시 농정과에서 자체심사표에 따라 선정
  - (법인) 농림부 산하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선정
- 사업시행(계약 체결, 컨설팅 수행) : 2018. 2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농정담당(☎ 728-3311, 3314)

## 4 농어촌진흥기금 용자 지원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업인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공급하여 영농어안정 도모

###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제3항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동 시행규칙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2,124억원(상반기 1,062, 하반기 1,062) ※ 2017년 기준
- 지원대상 : 도내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생산자단체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어업인과 단체 및 수출업체
- 용자 한도액
  - 농어가 :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생산자 단체 :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지원제외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기금 사업을 받고 있는 자
  - 배우자 및 본인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교직원 포함)이거나
  -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 기타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전년도 기준) 이상인 자 등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연 2회(상반기 3~4월, 하반기 7~8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용자취급 금융기관 : 농(축)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 신청자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어축산인 및 생산자 단체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농정담당(☎ 728-3311, 3314)

## 5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

###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12조 및 제23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15명(분기) · 40백만원(자체재원 40)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 농어업인 중 도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자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시는 9개동(일도1·2동, 용담1동, 이도1·2동, 건입동, 삼도1·2동, 삼양2동)을 제외한 모든 읍면동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 ※ 단, 이도2동(49통), 건입동(18통), 삼양2동(5, 13통)은 농촌지역으로 지정됨
- 지원제외 : 본인의 농어업 외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자(1자녀의 경우)
- 지원내용 : 해당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자 : 도외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농정담당(☎ 728-3311, 3314)

## 6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 여성 농어업인 출산 시 농어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농중단방지 및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지원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49명 · 312.5백만원(자체재원 250, 자부담 62.5)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90일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한 전업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도우미 이용 금액의 80% 지원
- 지원기준
  - 1일 지원액 : 56,000원      ☞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80%
  - 1인 지원액 : 5,040,000원      ☞ 70,000원×90일(최대 이용일수)×80%
- 지원제외 : 같은 세대의 직계가족이 농어가도우미로 계약 체결한 경우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자 :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농정담당(☎ 728-3311, 3314)

## 7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사업

- ❖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사업 운영으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여건 개선

### □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설치기준 : 읍·면지역 당 1개소
- 사업량 및 사업비 : 5개소 · 590백만원(자체재원 590)
- 지원기준 : 개소당 118백만원 이내
  - 센터 프로그램 실정 및 운영에 따라 지원사업비 조정
-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학습시설을 확보한 자.
- ※ 해당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은 본 센터 시설 또는 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 신청방법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사업 신청서 작성 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농정담당(☎ 728-3311, 3314)

## 8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 ❖ 사망·장애·질병 등 농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피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공제 혜택을 모든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공동 부담으로 공제료 지원

### □ 지원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공제상품명 : 2018 NH농협생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지원금액 : 505,000천원(자체재원 505,000)
- 추진방침
  - 지역농협을 통해 NH농협생명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신청한 농업인
  - 공제료는 NH농협생명 제주총국을 통해 일괄 지원 및 정산
  - 공제료는 개인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농협 실정과 가입 농가 희망에 따라 부부형 지원 가능
  - 공제료 지원 비율은 가입 공제료의 25% 지원
    - ※ 공제료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25%, 지역농협 25%

### □ 신청방법 및 절차

- 공제가입 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 신청자 : 공제 가입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가입상품에 따라 상이)
- 신청장소 : 거주지 지역농협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농정담당(☎ 728-3311, 3314)



## [ 감귤(과수) 분야 ]

### 1 기타과수 고품질 생산기반시설 지원

- ❖ 감귤 이외 과수하우스를 시설 현대화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
- ❖ 과실의 안정 생산 기반구축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 4개 사업(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재난방지시스템)
- 사업비 : 50백만원(도비 3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기타과수하우스 재배농가 중 사업 희망농가
- 지원단가 : 비상발전기 10,000천원/대(30kw), 자동개폐기 14,600천원/ha, 스프링클러시설 13,900천원/ha, 재난방지시스템 880천원/대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8. 1월 ~ 2월
- 신청장소 : 토지(과원)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기간, 지원단가 등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 728-3331~3334)

## 2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지원

- ❖ 과수농가의 고령화로 과수 정지·전정에 많은 노동력 투입으로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으로 작용
- ❖ 과수 전정용 전동 가위 지원으로 부족한 농가일손 해소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66대
- 사업비 : 200백만원(도비 120, 자부담 80)
- 지원대상 : 과수 재배농가 중 사업 희망농가
- 지원단가 : 3,000천원/대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8. 1. 5. ~ 2018. 1. 19.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3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

- ❖ 고품질 감귤의 연중 생산을 위하여 노지 재배 위주의 생산체계를 시설 재배로 전환
- ❖ FTA체결 등 개방확대에 대응한 감귤산업 기반 구축 필요

####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26ha·10,420백만원(기금 2,084, 도비 3,126, 용자담 5,210)
- 지원대상 : 감귤비가림하우스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 신청시 자동개폐기시설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빗물처리(물탱크)시설은 의무설치
- 지원단가 : ha당 342,000천원
- 지원비율 : 기금 20%, 도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 범위내 지원
  - ※ 지원단가 및 사업량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7. 11. 23. ~ 12. 6.(신청마감)
  - ※ 2019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8. 10월 ~ 11월 예정
- 신청장소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4 감귤 우량품종갱신 지원

- ❖ 불량 품종 및 노령수의 품종갱신으로 품질향상 여건 조성 필요
- ❖ 온주밀감 위주 재배 형태를 탈피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당도계 만감류 재배 확대

###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5.1ha·120백만원(기금 24, 도비 60, 융자 36)
- 지원대상 : 기존 감귤원의 품종갱신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단가 : ha당 23,280천원
- 지원비율 : 기금 20%, 도비 50%, 융자 30%
- 지원 대상 품종(2017년 8개 품종 → 2018년 11개 품종)
  - 부지화(한라봉), 베니마돈나(황금향), 하례조생, 탐라조생, 상도조생, 감평(레드향), 세토까(천혜향), 탐나는 봉, 전구조생, 신예감, 남진해(카라향)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7. 11. 23. ~ 12. 6.(신청마감)
  - ※ 2019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8. 10월 ~ 11월 예정
- 신청장소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5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 ❖ 정전시 환풍기, 난방기 등 시설장비의 안정적 가동으로 시설재배 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생산여건 조성

###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31대·320백만원(기금 64, 도비 96, 용자담 160)
  - 지원대상 : 감귤하우스 내 비상발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 지원단가 : 대당 10,300천원(30kw 기준), 9,200천원(20kw 기준)
  - 지원비율 : 기금 20%, 도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사업장(필지) 1개소당 1대 범위내 지원
- ※ 지원단가 및 사업량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7. 11. 23. ~ 12. 6.(신청마감)
- ※ 2019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8. 10월 ~ 11월 예정
- 신청장소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6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 ❖ 날씨변화에 따라 수시로 하우스 창을 열고 닫는 번거로움 해소로 농가 편의 도모
- ❖ 갑작스런 날씨변화에 자동으로 대처함으로써 농업재해 위험을 감소시켜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 여건 조성

###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22.6ha·330백만원(기금 66, 도비 99, 용자담 165)
  - 지원대상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단가 : ha당 92대, 대당 166천원
  - 지원비율 : 기금 20%, 도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농가당 1ha, 92대 범위내 지원
- ※ 지원단가 및 사업량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7. 11. 23. ~ 12. 6.(신청마감)
- ※ 2019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8. 10월 ~ 11월 예정
- 신청장소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7 감귤원(하우스, 노지) 관수시설 지원

- ❖ 관수공급 시설이 미 설치된 감귤원에 관수시설을 지원하여 인위적 수분 조절 및 농약 살포 등 고품질 감귤 생산 활동 지원
- ❖ FTA체결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11.1ha·160백만원(기금 32, 도비 48, 용자담 80)
- 지원대상 : 감귤원 및 감귤하우스 내 관수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단가
  - 하우스 수동 스프링클러 : ha당 14,320천원
  - 하우스 수동 점적관수 : ha당 8,860천원
  -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 : ha당 11,170천원
- 지원비율 : 기금 20%, 도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농가당 1ha 범위내 지원
  - ※ 지원단가 및 사업량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7. 11. 23. ~ 12. 6.(신청마감)
  - ※ 2019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8. 10월 ~ 11월 예정
- 신청장소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8 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

- ❖ 방풍망 설치로 강풍과 병해충에 따른 피해 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생산기반 조성
- ❖ 투광율 향상 및 작업편의 제공으로 FTA체결 등 개방확대에 대응한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12.1ha·200백만원(기금 40, 도비 60, 용자담 100)
- 지원대상 : 감귤원에 방풍망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 지원단가 : 400m(1ha)당 16,400천원 ☞ m당 41천원
- 지원비율 : 기금 20%, 도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농가당 사업량이 60m이상인 경우 지원
  - ※ 지원단가 및 사업량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7. 11. 23. ~ 12. 6.(신청마감)
  - ※ 2019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8. 10월 ~ 11월 예정
- 신청장소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9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

❖ 고령화된 농촌의 작업환경 개선 및 인력난 해소와 노동력 절감을 통한 감귤농가 소득증대 도모

###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21.4ha·180백만원(기금 36, 도비 54, 용자담 90)
- 지원대상 : 감귤원에 농산물운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 지원단가
  - 동 력 운반기 : 운반기 설치비 - 개소당 1대 3,000천원  
레 일 설치비 - 1ha당 2,400천원(m<sup>2</sup>당 240원)
  - 무동력 운반기 : 운반기 설치비 - 개소당 1대 792천원  
레 일 설치비 - 1ha당 4,618천원(m<sup>2</sup>당 461.8원)
- 지원비율 : 기금 20%, 도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사업장(필지) 1개소당 운반기 1대 범위내 지원
  - ※ 지원단가 및 사업량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7. 11. 23. ~ 12. 6.(신청마감)
  - ※ 2019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8. 10월 ~ 11월 예정
- 신청장소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10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 지원

- ❖ 겨울철 일시적 기온 하강에 따른 냉해·동해 재해발생 사전 예방으로 하우스 시설 내 작물 보호
- ❖ 안정적인 시설과수 영농환경 조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20ha·2,200백만원(기금 440, 도비 660, 용자담 1,100)
- 지원대상 : 감귤하우스 내 보온커튼(동·냉해 방지용)설치 희망농가
  - ※ 단, 가온하우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단가 : ha당 110,000천원
- 지원비율 : 기금 20%, 도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농가당 1ha 범위내 지원
  - ☞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지원으로 2019년부터 일몰 예정
  - ※ 지원단가 및 사업량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7. 11. 23. ~ 12. 6.(신청마감)
- 신청장소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11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 ❖ 감귤농가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하우스 내 자동화된 병해충 방제 시설 설치로 노동력 절감
- ❖ 하우스 내 농약 방제에 따른 안전성 확보로 감귤농가 영농환경 개선

###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44.3ha·1,400백만원(기금 280, 도비 420, 용자담 700)
- 지원대상 : 감귤하우스 내 무인방제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 지원단가
  - 포그형(일반) 방제시설 : ha당 31,600천원
  - 에어포그형(초미립자) 방제시설 : ha당 49,800천원
  - 이동식 방제시설 : ha당 16,680천원
  - 노지감귤원 방제시설 : ha당 29,100천원
- 지원비율 : 기금 20%, 도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농가당 1ha 범위내 지원
  - ※ 지원단가 및 사업량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7. 11. 23. ~ 12. 6.(신청마감)
  - ※ 2019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8. 10월 ~ 11월 예정
- 신청장소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12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

- ❖ 여름철 일시적 기온상승에 따른 고온 및 재해발생 사전 예방
- ❖ 하우스 내 작물 생육환경 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기여

###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25.6ha·500백만원(기금 100, 도비 150, 용자담 250)
- 지원대상 : 감귤하우스 내 환풍기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 지원단가 : 0.5ha당 9,750천원(13대 기준)
- 지원비율 : 기금 20%, 도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 범위내 지원

※ 지원단가 및 사업량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7. 11. 23. ~ 12. 6.(신청마감)
  - ※ 2019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8. 10월 ~ 11월 예정
- 신청장소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13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

- ❖ 하우스 내부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작물 생육환경 개선 및 냉해 방지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 서리해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고품질감귤 생산여건 조성

###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20ha·425백만원(기금 85, 도비 127.5, 용자담 212.5)
- 지원대상 : 감귤하우스 내 송풍팬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 지원단가 : 0.5ha당 10,640천원(38대 기준)
- 지원비율 : 기금 20%, 도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 범위내 지원

※ 지원단가 및 사업량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7. 11. 23. ~ 12. 6.(신청마감)
  - ※ 2019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8. 10월 ~ 11월 예정
- 신청장소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14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 ❖ 노지감귤 관행재배로 인한 고품질 감귤나무의 당도향상 한계로 기존 과원의 원지정비를 통한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조성
- ❖ FTA체결 등 개방확대에 대응한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조성

###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30ha·1,620백만원(기금 324, 도비 810, 용자 486)
- 지원대상 : 성목 노지 감귤원의 원지정비를 희망하는 농가
- 지원단가 : ha당 62,252천원
- 지원비율 : 기금 20%, 도비 50%, 용자 30%
- 지원한도 : 농가당 1ha 범위내 지원(최소 1,650㎡이상 지원)
  - ※ 지원단가 및 사업량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7. 11. 23. ~ 12. 6.(신청마감)
  - ※ 2019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8. 10월 ~ 11월 예정
- 신청장소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15 감귤하우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지원

❖ 겨울철 일시적 기온하강에 따른 감귤 동해 및 냉해 등 자연재해 사전 예방으로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기반 구축

###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150대·975백만원(기금 195, 도비 292.5, 용자담 487.5)
- 지원대상 : 감귤하우스에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 지원단가 : 대당 6,500천원(20kcal 기준), 8,500천원(30kcal 기준)
- 지원비율 : 기금 20%, 도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사업장(하우스) 1개소당 난방기 1대 범위내 지원
  - ※ 지원단가 및 사업량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7. 11. 23. ~ 12. 6.(신청마감)
  - ※ 2019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8. 10월 ~ 11월 예정
- 신청장소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16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

- ❖ 감귤원 조성 초기에 식재한 방풍수가 높게 자라 경관을 해치고 햇빛투과 감소, 양분경합 등으로 방풍수 인근 감귤나무 피해가 발생하여 방풍수 정비를 통해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구축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 4,735그루(밀동 절단 기준)
- 사업비 : 83.3백만원(도비 50, 자부담 33.3)
- 지원대상 : 감귤원 방풍수 밀동 제거를 희망하는 농가
- 지원단가 : 17,600원/그루(밀동절단), 25,000원/그루(중간절단)
  - 방풍수 밀동 또는 중간 제거 및 절단목 정리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8. 1. 5. ~ 2018. 1. 19.
- 신청장소 : 토지(과원)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17 친환경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시설 지원

❖ 친환경인증 노지 감귤원에 관수 및 액비 살포가 가능한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를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 2ha(자동승강형 기준)
- 사업비 : 50백만원(도비 3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 노지감귤원 재배농가 중 사업 희망농가
- 지원단가 : 1,117원/m<sup>2</sup>(일반형), 2,600원/m<sup>2</sup>(자동승강형)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8. 1월 ~ 2월
- 신청장소 : 토지(과원)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기간, 지원단가 등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18 과수원정비용 파쇄기 지원

- ❖ 감귤원 전정목 파쇄기를 농·감협 또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중인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여 농기계이용 제고 및 농가 편의 도모
- ❖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으로 농업경영비 부담 해소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 파쇄기 8대
- 사업비 : 52.8백만원(도비 31.6, 자부담 21.1)
- 지원대상 : 농·감협 또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중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단가 : 6,600천원/대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8. 1월 ~ 2월
- 신청장소 : 농·감협 또는 영농조합법인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기간, 지원단가 등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19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

- ❖ 동해피해 방지 및 조류·병해충 사전 예방으로 고품질감귤 생산
- ❖ 봉지피복으로 노지한라봉 산함량 감소 및 당도의 균일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 500상자 (2,000매 入 / 상자)
- 사업비 : 50백만원(도비 3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노지한라봉 재배농가 중 사업희망 농가
- 지원단가 : 100천원 / 상자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8. 1월 ~ 2월
- 신청장소 : 토지(과원)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기간, 지원단가 등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20 FTA대응 감귤원 성목이식 지원(3년차사업)

- ❖ '16년 성목이식 1년차사업 대상자들에게 3년차사업(타이백, 관수시설) 연속 지원을 통한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 3.4ha
- 사업비 : 127.2백만원(도비 89, 자부담 38.2)
- 지원대상 : 성목이식 1년차 사업완료 농가(8농가)
- 지원단가 : 37,421천원 / ha
- 지원비율 : 도비 70%, 자부담 30%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8. 1월 ~ 2월
- 신청장소 : 토지(과원)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기간, 지원단가 등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21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

- ❖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를 통한 고당도 감귤 생산으로 품질 및 가격 차별화로 농가 조수입 증대
- ❖ FTA 대응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40.3ha·716.7백만원(도비 430, 자부담 286.7)
- 지원대상 : 감귤원에 토양피복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 지원단가 : ha당 17,800천원
  - 토양멀칭 : 11,500천원/ha, 점적관수 : 6,300천원/ha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8. 1. 5. ~ 2018. 1. 19.
- 신청장소 : 감귤원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22 감귤 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

- ❖ 감귤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생산자 실명제 표기로 농가의 책임 의식 고취 및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마련
- ❖ 소비성향 변화 및 구매패턴의 다양화에 맞춰 소비자 중심의 접근방식 강화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 5개소 내외
- 사업비 : 150백만원(지특 75, 도비 30, 자부담 45)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등
- 지원단가 : 감귤 생산 실명제장비 1set당 30백만원 내외
- 지원비율 : 보조 70%(지특 50, 도비 20), 자부담 30%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8. 1월 ~ 2월
- 신청장소 : 농정과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기간, 지원단가 등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23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 ❖ 2017년산 노지감귤 수출 참여농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여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
- ❖ 수출 감귤 물량의 안정적 확보로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수출물량 1,400톤 · 33.6백만원(도비 33.6)
- 지원대상 : 2017년산 노지감귤 100kg이상 수출한 농가
  -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을 통하여 2017년산 노지감귤을 수출한 농가에 지원
- 지원기준 : 수출실적 1톤당 24,000원 상당의 비료지원(정액지원)

### □ 신청방법 및 절차

- 2017년산 노지감귤 수출실적 조사(수요조사) : 2018. 1월
- 신청기간 : 2018. 2월
- 신청장소 : 농정과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 지원기준 및 사업량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24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

- ❖ 노지감귤을 수출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에 포장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물류부담 경감으로 감귤 수출 확대
- ❖ 수출 감귤 물량의 안정적 확보로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150,000매 · 150백만원(도비 150)
- 지원대상 : 노지감귤을 수출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지원비율 : 도비 100% (정액지원)
  - 지원기준 : 2,000원/상자(상자당 1,000원 정액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지원자재 : 골판지 및 플라스틱 감귤상자(10kg, 15kg 포장상자)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8. 1월 ~ 2월
- 신청장소 : 농정과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지원기준 및 사업량 등은 2018년 사업계획 확정시(2018. 1월중) 변경될 수 있음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3334)



## [ 식품산업 분야 ]

### 1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

- ❖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하여 해올렛 브랜드 홍보·마케팅 강화
- ❖ 해올렛 상품 품질제고 및 직판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지원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비 : 45백만원(도비 40, 자부담 5)
- 지원대상: 농업회사법인(주) 해올렛연합사업단
- 사업내용 : 해올렛 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 등

#### 신청방법 및 절차

- 예산안 확정 통지 및 지원계획 통보(제주시) : 2018. 1월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 대상자) : 2018.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 2018. 2월 ~ 사업 종료 시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실시 : 사업 종료 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식품산업담당(☎ 728-3321~2)

## 2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

❖ 제주자원식물인 황칠나무를 2·3차 산업과 연계하여 융·복합화함으로써 황칠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황칠 가공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

### □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등

### □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2015. 1월 ~ 2018. 12월(4년)
- 사업비(2018년) : 200백만원(국비 200)
- 지원대상
  -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단
- 사업내용
  - 사업단 운영, 황칠 가공제품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

### □ 신청방법 및 절차

- 기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 2018. 1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 2018. 1월 ~ 12월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실시 : 사업 종료 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식품산업담당(☎ 728-3321~2)

### 3 제주석창포 지역 활성화 사업

❖ 제주향토자원인 석창포를 2·3차 산업과 연계하여 융·복합화함으로써, 향토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성장 동력으로 육성

#### □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등

#### □ 사업내용

- 총 사업기간 : 2016. 1월 ~ 2019. 12월(4년)
- 사업비(2018년) : 300백만원(국비 300)
- 지원대상
  - 제주석창포습사업단
- 사업내용
  - 사업단 운영, 석창포 가공제품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

#### □ 신청방법 및 절차

- 기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 2018. 1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 2018. 1월 ~ 12월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실시 : 사업 종료 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식품산업담당(☎ 728-3321~2)

## 4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 개선 및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손실액 일부 보전

### □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20ha · 37백만원(국비 18.5, 도비 18.5)
- 지원대상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로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경관보전 재배 이행농가 및 마을에 직불금 지급
  - 지원단가(ha당) : 농가 170만원(경관작물) + 마을 15만원  
농가 100만원(준경관작물) + 마을 15만원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통보(시→읍·면·동) : 2018.1월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역 신청(마을 → 읍·면·동 → 시) : 2018. 2월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지역 선정(시) : 2018. 3월말
- 이행사항점검 및 보조금 지급 등 사업 마무리 : 2018. 4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식품산업담당(☎ 728-3321~3)

## 5 발농업 직접지불제

❖ 발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발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 □ 지원근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의2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5,200ha · 2,246백만원(전액 국비)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
-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모든 발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
- 지원단가 : 478,095원/ha(지원한도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통보(시 → 읍·면·동) : 2018. 1월
- 농가 사업신청 접수(농가 → 읍·면·동) : 2018. 2월 ~ 4월
- 이행사항 점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18. 6월 ~ 9월
- 보조금 지급 등 사업 마무리 : 2018. 10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식품산업담당(☎ 728-3321~3)

## 6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농업 생산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보전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 □ 지원근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4,000ha · 7,200백만원(국비 5,760, 도비 1,440)
-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관리의무 및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실경작자
- 지원대상 농지 : 농지법 및 초지법상 농지 또는 초지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 ~ 2005년까지 실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경작지
- 지원기준 : 농지 600천원/ha, 초지 350천원/ha(국비 80%, 지방비20%)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통보(시 → 읍·면) : 2018. 1월
- 마을단위 사업 신청(마을 → 읍·면 → 시) : 2018. 3월
  - 마을 발전 계획서 제출
- 농가 사업신청 접수 : 2018. 2월 ~ 4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사항점검 : 2018. 6월 ~ 9월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관리협약 체결 : 2018. 9월
- 보조금 지급 등 사업 마무리 : 2018. 10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식품산업담당(☎ 728-3321~3)

## 7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

### 지원근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1ha·2백만원(전액 국비)
- 지원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 지원단가 : 고정직불금 807,312원/ha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통보(시 → 읍·면·동) : 2018. 1월
- 농가 사업신청 접수 : 2018. 2월 ~ 4월
- 이행사항 점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18. 5월 ~ 8월
- 보조금 지급 등 사업 마무리 : 2018. 9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식품산업담당(☎ 728-3321~3)

## 8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직접 지불로 친환경농업 육성
- ❖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및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 지원근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6조~제23조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300ha · 370백만원(전액 국비)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도입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 \* 지급회수(농지별) : 유기 - 5년간(5회), 무농약 - 3년간(3회)
  -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없이 지속지급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또는 농업법인
- 지원단가(ha당) : 유기 - <과수> 1,400천원, <채소·특작기타> 1,300천원  
무농약 - <과수> 1,200천원, <채소·특작기타> 1,100천원
  - 유기지속직불(ha당) : <과수> 700천원, <채소·특작기타> 650천원
- 지급한도 : 농가당 최소 0.1ha 이상 최고 5ha 이하

### □ 신청방법 및 절차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 통보 : 2018. 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농가별 신청 : 2018. 3월
- 친환경농업 인증기관별 친환경 이행상황 점검 : 2018. 5월 ~ 11월
-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 2018. 11월
- 친환경농업직불제 농가별 보조금 지급 : 2018.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식품산업담당(☎ 728-3321~3)



## [ 원예특작 분야 ]

### 1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 친환경농업 경영비 부담 해소 및 지력증진, 농약 화학비료 사용감소 유도
- ❖ 농업 농촌의 환경보전과 소비자 보호차원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장려

#### □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450농가, 650ha, 1,000백만원(국비 200 지방비 300 자담 50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단가 :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 사업대상 : 천적, 미생물제제 등 친환경유기농업 자재를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 무농약인증
  - 친환경 인증농가·농업법인(유기·무농약인증 1,000㎡이상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친환경유기농업자재」로 등록 고시된 농자재
  - 녹비작물종자: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등
  - 천적(25종): 시설재배 농가만 해당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고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지원자재 : 기계유유제, 석회보르도액, 미생물제제 등
  - ※ 친환경재배농가가 사용중(희망)인 농자재 일지라도 친환경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되어야 지원가능

#### □ 신청방법 및 절차

- 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 농가별 신청접수 : 2017. 11 ~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2018. 2 ~ 3월
- 사업대상자별 사업시행 : 2018. 3 ~ 12월
-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2018. 3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원예특작담당(064-728-3351~3)

## 2 친환경농산물 소득기반 특별지원(도예산)

◆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시키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토록 지원

### □ 지원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 □ 사업내용

- 사업량 : 800농가(도 전체)
- 도 총괄 사업비 : 700백만원(도비 700)
  - \* 사업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기에 소진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지원 제외
  - 인증이 취소된 자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
  - 조직체지원사업 대상자, 동일세대원 등 중복지원 제외
  - 타사업에서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
- 지원조건 : 정액지원(도비 100%)
  - \* 사업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기에 소진 될 수 있음
- 농가당 지원한도액 : (보조금기준)유기농 1,000천원, 무농약 700천원

### □ 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 2018. 1. 12. ~ 2. 13.
- 사업대상자 선정 : 2018. 3월 한
- 사업시행 : 2018. 3월 ~ 10월 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원예특작담당(064-728-3351~3)

### 3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도예산)

- ◆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비용 부담 경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및 인증면적 확대 도모
-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을 출하 전 검사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시장유입 차단

#### □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가공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사업내용

- 도 총괄 사업비 : 221백만원(국비 70, 도비 151)
  -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정액) : 54백만원(도비 54)
  -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정액) : 67백만원(도비 67)
  -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100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 사업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기에 소진 될 수 있음
-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 : 2017. 12. 1.~2018. 11. 30.
  - \* '18. 12. 1 이후 취득(실시)한 인증수수료와 검사비는 '19년 사업비로 지원
- 지원 제외 : 인증이 취소 된 자,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농협 등에서 비용을 지원 받은 자 등
- 지원한도액(보조금 기준)
  - 친환경인증비용 및 분석비용 기준단가
    - 친환경인증비용 단가(70%수준지원) / 안전성검사비(220천원/건)
  - GAP인증비용 및 분석비용 기준단가
    - GAP인증비용 단가(70%수준지원) /안전성검사비(전액지원-국비지원기준)

#### □ 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홍보 : 2018. 1월
- 사업시행 : 2018. 1월 ~ 12월 15일 한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원예특작담당(064-728-3351~3)

## 4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지원사업

- ❖ 소비자들의 웰빙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농식품 소비증가 추세에 있어 청정제주 친환경 웰빙기능성 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처리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농산물 전문생산자조직체를 육성,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지원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개소·200백만원(국비 100 지방비 40 자담 60)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담 3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인증 농업인
- 사업내용 : 생산(보관)시설지원 - 건조실, 냉동보관실, 동결건조기 설치  
제품가공시설지원 - 분쇄기, 상품포장시설, 식품제조시설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통보 : 2018. 1월
- 사업별 대상자 신청 접수 : 2018. 1월~2월
- 사업대상자 및 사업별 지원계획 확정 : 2018. 3월
- 사업대상자별 사업시행 : 2018. 3월 ~ 11월
- 사업추진 이행 점검 후 보조금 지급 사업마무리 : 2018. 3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원예특작담당(064-728-3351~3)

## 5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청정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친환경농업육성

### □ 지원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개소, 340백만원(국비 170 지방비 68 자담 102)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담 3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규모 5ha이상, 사업익년까지 친환경신규인증 5ha이상 가능한 조직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웰빙기능성작물 5ha이상인 조직체로서 사업익년까지 친환경 또는 GAP인증 5ha이상 신규 인증이 가능한 조직체(웰빙작물 : 자황벼, 흑미, 검은깨, 흑대두, 기장, 차조, 수수, 매밀, 보리, 특약용작물)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 유기농축산물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유통 시설·장비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통보 : 2018. 1월
- 사업별 대상자 신청 접수 : 2018. 1월~2월
- 사업대상자 및 사업별 지원계획 확정 : 2018. 3월
- 사업대상자별 사업시행 : 2018. 3월 ~ 11월
- 사업추진 이행 점검 후 보조금 지급 사업마무리 : 2018. 3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원예특작담당(064-728-3351~3)

## 6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

- ❖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 채소·화훼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 시설 설치 지원

### □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5ha·190백만원(국비 38 도비 57 용자 57 자부담 38)
- 지원대상 : 내재해형 시설 채소·화훼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제외대상 : 신규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블루베리, 망고 등 열대과수) 및 감귤지원제외
- 지원단가 : 다겹보온커튼(수평권취식) 1ha(10,000m<sup>2</sup>)당 130,000천원 등
  - 지원조건 : 국비 20% 도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배기열회수장치 등 에너지절감시설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2018. 1월
- 사업별 대상자 신청 접수 : 2018. 1월중
- 사업대상자 및 지원계획 확정 : 2018. 2월
  - 2018년 사업 수요조사 시 신청자 우선 지원
- 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지급 등 사업 마무리 : 2018. 3월 ~ 12월
- '19년 사업 수요조사 접수(예정) : 상반기 - 2018. 4월 ~ 5월 예정
  - 하반기 - 2018. 9월 ~ 10월 예정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원예특작담당(064-728-3351~3)

## 7 수출용 화훼(백합)종구 구입비 지원

- ❖ 수출 참여 농가에 수출용 화훼 종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 경감 및 고품질 화훼 생산 및 수출 증진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국내 화훼가격 지지 도모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자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200천구 · 7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백합 수출참여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2017년 3월 ~ 2018년 2월(1년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단가 : 수출 실적에 따른 종구 구입비의 일부 지원(정액 350원/구당)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통보 : 2018. 2월
- 사업별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2018. 5월
- 사업대상자 및 사업별 지원계획 확정 : 2018. 7월
- 사업대상자별 추진 상황 등 지도 점검 추진 : 2018. 5월 ~ 11월
- 사업추진상황 이행 점검 및 보조금 지급 등 사업 마무리 : 2018. 9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원예특작담당(064-728-3351~3)

## 8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 ❖ 청정제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설채소·화훼 생산시설의 단지화를 통한 다양한 신선농산물의 연중 생산 공급 그리고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4.1ha·1,667백만원(도비 1,000 자부담 667)
- 지원대상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채소·화훼 시설재배 희망 농업인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단가 : ha(10,000m<sup>2</sup>)당 400,000천원 ⇒ 지원단가의 60% 보조 지원
- 지원규모 : 농가당 1,650m<sup>2</sup> 기준
  - 총사업비 66,000천원 (보조 39,600 자부담 26,400)
- 지원내용 : 채소·화훼작물 재배용 무가온 파이프비닐하우스 시설비 지원

### □ 신청방법 및 절차

- 농업보조금 통합 신청 : 2018. 1. 5. ~ 2018. 1. 19.
- 사업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심의 : 2018. 1월 ~ 2월
- 사업대상자 순위 확정(보조금 심의 후) : 2018. 2월
- 사업대상자 확정 : 2018. 3월
- 사업추진 : 2018. 4월 ~ 11월
- 사업 완료 및 정산 : 2018. 4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원예특작담당(064-728-3351~3)



## 9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비상발전기 온풍난방기 등 지원 사업

- ❖ 채소·화훼 시설재배 농업인의 작업 편의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속 시설·장비 지원으로 시설원예 농가 경쟁력 제고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25개소·283백만원(도비 170 자부담 113)
- 지원대상 : 채소·화훼기준 시설 1,500㎡이상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운영 농업인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비상발전기, 온풍난방기 등
  - 비상발전기, 온풍난방기 : 농가당 1대 지원
  - 자동개폐기 : 신청 하우스 동수에 따라 대수 조정, 측면 지원 제외
  - 환풍기 : 2동당 1대 기준 지원
- 지원단가 :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기준 단가 적용
  - ※ 지원상한 : 총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사업신청량(하우스 동수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 신청방법 및 절차

- 농업보조금 통합 신청 : 2018. 1월 8일 ~ 1월 19일
- 사업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심의 : 2018. 1월 ~ 2월
- 사업대상자 순위 확정(보조금 심의 후) : 2018. 2월
- 사업대상자 확정 : 2018. 3월
- 사업추진 : 2018. 4월 ~ 11월
- 사업 완료 및 정산 : 2018. 4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원예특작담당(064-728-3351~3)

## 10 기후변화 대응(열대·아열대) 특화소득 작물육성 사업

❖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특화품목을 소득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新소득원으로 발굴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2개소2,860백만원(도비 2,000 자담 860)
- 지원대상 : 기후변화 대응 특화작물 육성사업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 육성(지원)품목 : 열대 아열대 채소류, 화훼류 등
- 사업내용 : 개소당 하우스시설(3ha이상),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 등 일괄 지원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 계획 수립 및 공모 : 2018. 1월
- 사업신청자 심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 2018. 2월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통보(시 → 농협) : 2018. 3월
- 세부사업추진 계획 (농협 → 시) : 2018. 3월
- 사업대상자 및 지원계획 확정 (시 → 농협) : 2018. 3월
- 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지급 등 사업 마무리 : 2018. 3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원예특작담당(064-728-3351~3)

## 11 친환경비료(발효액비 등)지원 사업

- ❖ 농림 축·수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 환경친화적인 자원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20백만원(도비 60 자담 6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친환경발효액비(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대상자 우선순위 : 유기인증 > 무농약 > 일반농업
  - 필지별 사업량(대상자)확정
- 지원단가(ha당)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일반농업 75만원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통보 (시 → 읍면동) : 2018. 1월
- 농가 사업신청 접수 (농가 → 읍면동 → 시) : 2018. 1월말
- 사업대상자 및 지원계획 확정 (시 → 읍면동) : 2018. 2월
- 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지급 등 사업 마무리 : 2018. 3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원예특작담당(064-728-3351~3)

## 12 시설원에 현대화 사업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 지원근거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5.9ha · 144백만원(기금 29 도비 43 융자 43 자부담 29)

- 지원조건 : 기금 20% 도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채소·화훼류 등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① 농산물전문생산단지②출하약정 체결 일반원예시설③전국단위 생산자 연합회 소속 화훼류 재배농가

○ 지원단가 : 사업비 상한액 700백만원/ha (평당 약 231,000원)  
사업비 하한액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 2개 이상의 견적서 검토하여 적용(원가계산서, 산출근거 등 비교)

○ 지원내용 :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안방제기 등 스마트팜 기반시설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2018. 1월

○ 사업별 대상자 신청 접수 : 2018. 1월중

○ 사업대상자 및 지원계획 확정 : 2018. 2월

- 2018년 사업 수요조사 시 신청자 우선 지원

○ 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지급 등 사업 마무리 : 2018. 3월 ~ 12월

○ '19년 사업 수요조사 접수(예정) : 상반기 - 2018. 4월 ~ 5월 예정  
하반기 - 2018. 9월 ~ 10월 예정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원예특작담당(064-728-3351~3)

## 13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

-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 지원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568점(1,000ha)·142,000천원  
(국비 71,000, 도비 71,000)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50%
- 대상자 :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 품목 생산조직(농협 등)
- 수행기관 : 민간인증기관
- 지원단가 : 250천원/점(시료채취비, 토양·용수 분석비)
  - 시료채취비 : 44천원/점(토양 22천원, 용수 22)
  - 토양·용수 분석비 : 206천원/점(토양 95천원, 수질 111)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통보 (시 → 읍면동) : 2018. 1월
- 농가 사업신청 접수 (농가 → 읍면동 → 시) : 2018. 1월말
- 사업대상자 및 지원계획 확정 (시 → 읍면동) : 2018. 2월
- 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지급 등 사업 마무리 : 2018. 3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원예특작담당(064-728-3351~3)

## [ 유통지원 분야 ]

### 1 경작지 암반 제거 사업

❖ 농경지 내 암반으로 인한 경작 불편 해소 및 영농 기계화 기반 마련으로 농가의 영농 부담 감소 및 농경지 활용도 증대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
- 2018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108개소·755백만원(지특 302, 도비 151, 자부담 302)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200㎡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 지원기준 : 7,000천원 / 개소당(보조한도 4,200천원, 보조율 60%) \*㎡당 35천원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 추진계획 수립·통보(시 → 읍·면·동) : 2018. 1월
- 사업 신청·접수(농가 → 읍·면·동) : 2018. 1. 5. ~ 2018. 1. 19.
- 사업 대상자 확정(보조금심의위원회) : 2018. 2월 ~ 3월
- 사업예산 재배정(시 → 읍·면·동) : 2018. 3월
- 사업 추진 및 정산(읍·면·동) : 2018. 3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728-3341~4)

## 2 발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발작물 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 및 밭농업 경쟁력 강화 도모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
- 2018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598대·3,588백만원(도비 2,153, 자부담 1,435)
- 지원대상 : 발작물 재배 농가
- 지원기종 : 경운기, 관리기, 비료 살포기, 로타베이터 등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 대상 또는 형식 승인이나 품질 인증을 받은 농기계
- 지원내용 : 소형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10,000천원 /1대당(보조한도 6,000천원, 보조율 60%)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 추진계획 수립·통보(시 → 읍·면·동) : 2018. 1월
- 사업 신청·접수(농가 → 읍·면·동) : 2018. 1. 5. ~ 2018. 1. 19.
- 사업 대상자 확정(보조금심의위원회) : 2018. 2월 ~ 3월
- 사업예산 재배정(시 → 읍·면·동) : 2018. 3월
- 사업 추진 및 정산(읍·면·동) : 2018. 3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728-3341~4)

### 3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 ❖ 자가 육묘 기반 확충으로 영농비 절감 및 영농환경 유연성 확보
- ❖ 토양 환경에 적합한 우량품종 개발 및 고소득 농산물 생산 유도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
- 2017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134개소·1,333백만원(도비 800, 자부담 533)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165㎡ 이하 농가 보급형 육묘장 시설비 지원
  - 기초공사, 골조공사, 피복공사, 개폐공사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
- 지원기준 : 10,750천원/1개소당(보조한도 6,450천원, 보조율 60%)
  - ㎡당 단가 : 65,150천원(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 추진계획 수립·통보(시 → 읍·면·동) : 2018. 1월
- 사업 신청·접수(농가 → 읍·면·동) : 2018. 1. 5. ~ 2018. 1. 19.
- 사업 대상자 확정(보조금심의위원회) : 2018. 2월 ~ 3월
- 사업예산 재배정(시 → 읍·면·동) : 2018. 3월
- 사업 추진 및 정산(읍·면·동) : 2018. 3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728-3341~4)



## 4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 채소 등 발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보관 기간 연장 및 출하 시기 조절 등으로 상품 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화 도모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
- 2018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123개소·2,030백만원(도비 1,218, 자부담 812)
- 지원대상 : 발작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16.5㎡ 이하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또는 장비
- 지원기준
  - 시설인 경우 : 16,500천원/1개소당(보조한도 9,900천원, 보조율 60%) \*16.5㎡ 기준
  - 장비인 경우 : 12,500천원/1개소당(보조한도 7,500천원, 보조율 60%)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 추진계획 수립·통보(시 → 읍·면·동) : 2018. 1월
- 사업 신청·접수(농가 → 읍·면·동) : 2018. 1. 5. ~ 2018. 1. 19.
- 사업 대상자 확정(보조금심의위원회) : 2018. 2월 ~ 3월
- 사업예산 재배정(시 → 읍·면·동) : 2018. 3월
- 사업 추진 및 정산(읍·면·동) : 2018. 3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728-3341~4)

## 5 발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 가뭄 피해 예상 지역 농경지에 대한 스프링클러시설 지원으로 가뭄 피해 예방 및 청정 무공해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
- 2018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161ha·500백만원(도비 300, 자부담 200)
- 지원대상 : 발작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발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설치비 제외)  
- 농가당 0.1ha(1,000㎡) 이상 ~ 1ha(10,000㎡)이하 지원
- 지원기준 : 3,570천원/1개소(보조한도 2,142천원, 보조율 60%) \*㎡당 357원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 추진계획 수립·통보(시 → 읍·면·동) : 2018. 1월
- 사업 신청·접수(농가 → 읍·면·동) : 2018. 1. 5. ~ 2018. 1. 19.
- 사업 대상자 확정(보조금심의위원회) : 2018. 2월 ~ 3월
- 사업예산 재배정(시 → 읍·면·동) : 2018. 3월
- 사업 추진 및 정산(읍·면·동) : 2018. 3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728-3341~4)

## 6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 주산지별 농작물 특성에 적합한 농기계 지원을 통해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농촌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도모

### □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4개소·1,000백만원(도비 600, 자부담 400)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 영농단체(법인격)
- 지원내용 : 농작물 재배(파종~수확)에 이용되는 농기계
- 지원기종 : 트랙터, 굴삭기, 비료 살포기, 파쇄기, 로타베이터 등
- 사업내용 : 농기계 임대사업 또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 2018. 1월
- 사업 신청·접수(농정과) : 2018. 2월
- 사업 대상자 확정(보조금심의위원회) : 2018. 3월
- 사업 추진 및 정산 : 2018. 3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728-3341~4)

## 7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 ❖ 농업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통해 도로 주행 농업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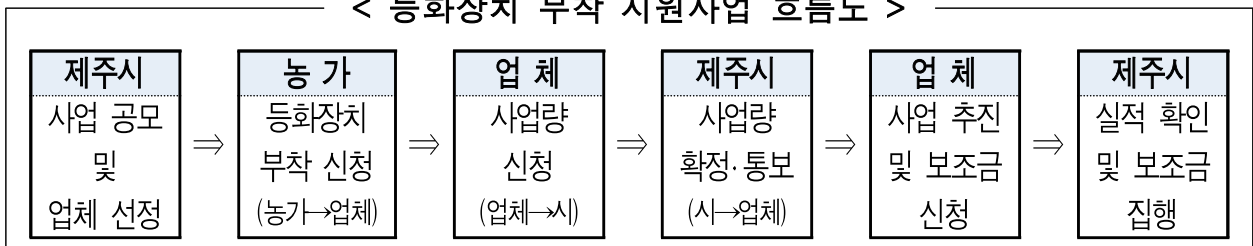
### □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150대 · 15백만원(국비 6, 도비 9)
  - 사업단가 : 등화장치 1개당 100천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 등) 소유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 지원내용 : 농업기계에 등화장치 설치(부착)비 전액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등화장치 1개 부착 원칙

#### <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흐름도 >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 2018. 1월
- 사업 지원 신청·접수(농가 → 업체) : 2018. 2월 ~ 3월
- 사업량 확정(보조금심의위원회) : 2018. 4월
- 사업 추진 및 정산 : 2018. 4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728-3341~4)

## 8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 ❖ 직항 운송노선 부재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수출물류비 지원한도(정부표준물류비의 25%)까지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농가)의 부담 감소 및 수출 확대

### □ 지원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8,000톤 · 1,800백만원
- 지원대상 : 제주에서 생산된 지원 대상품목(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업체 및 농가
- 지원내용 :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해상운송비 등) 일부 지원(정액)
- 대상품목 : 양배추 등 신선농산물, 백합 등 화훼류, 가공식품류
- 지원기준 : 정부표준물류비의 25%

### □ 신청방법 및 절차

- 수출물류비 지원 계획 공고 : 2018. 1월 ~ 2월
- 2018년 수출 계획 제출(업체 및 농가 → 농정과) : 2018. 2월
-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 : 수출 완료 후 매월 5일까지(제주시 농정과)
  -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확정 후 신청
- 수출물류비 지원 및 정산 : 2018. 2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728-3341~4)

## 9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 채소 등 농산물 주산지에 집하선별·저장 등에 필요한 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 10개소(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
- 사업비 : 733백만원(도비 440, 자부담 293)
- 지원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지역농협)
- 지원규모 : 개소당 50백만원 내외, 보조율 60%
- 사업내용
  - 시설 : 집하장, 선별시설, 건조시설 등
  - 장비 : 지게차, 파렛트, 선별기 등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 공모 : 2018. 1월 ~ 2월
- 사업 신청·접수(농정과) 및 : 2018. 2월
- 사업 대상자 확정(보조금심의위원회) : 2018. 3월
- 사업 추진 및 정산 : 2018. 3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728-3341~4)

## 1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 □ 지원근거

- 비료관리법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39,329톤 · 4,328백만원(국비 2,164 도비 2,164)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3종) 및 부속유기질비료(2종) 지원
- 지원단가
  - (국비) 유기질 1,300원, 퇴비 800~1,100원, (도비) 700원(의무부담)
  - ※ 친환경 인증농가 추가 지원(도비) : 유기질(1,000원), 퇴비·가축분퇴비(300원)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2,000(3,000)		
퇴비·가축분퇴비(원/20kg)	1,700(2,000)	1,600(1,900)	1,400(1,700)

\* ( )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단가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 신청·접수(농가 → 읍·면·동) : 2017. 11월 7일~ 12월 6일
- 사업 대상 및 사업 물량 확정 : 2018. 1월
- 사업 추진 및 정산 : 2018. 2월 ~ 12월
  - 유기질비료 공급 상황 확인·점검 : 분기별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728-3341~4)

## 11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 산성토양 및 유효균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 □ 지원근거

- 농지법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1,470톤 · 1,514백만원(국비 1,060, 도비 454)
- 지원대상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자
- 공급지역(3년 1주기)
  - 한림읍, 우도면, 동지역
- 지원내용 : 규산질·석회질·패화석비료 전액 무상 지원(국비 70%, 도비 30%)
- 지원기준 : 농업기술센터가 산정한 법정리·동별 농경지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 신청·접수(농가 → 읍·면·동) : 2017. 11월 7일 ~ 12월 6일
- 사업 대상 및 사업 물량 확정 : 2018. 1월
- 사업 추진 및 정산 : 2018. 2월 ~ 12월
  - 토양개량제 적정 공급 여부 및 살포 상황 등 확인·점검 : 반기별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728-3341~4)



## 12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 ❖ 수매농산물 생산·출하 농가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으로 영농비용 경감도모 및 식량작물 재배 장려를 통한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43천매 · 30백만원
- 지원대상 : 농산물(식량작물) 수매 지역 농협
- 지원내용 : 식량작물 수매하는 농협에 포장재비 1매당 700원 지원(정액)
- 지원품목 : 보리, 기장, 콩, 참깨, 메밀 등 농협 수매 식량작물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 2018. 3월
  - 사업 추진계획 통보(농정과 → 지역농협)
- 사업 지원 신청·접수(지역농협 → 농정과) : 2018. 4월
-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확정(보조금심의위원회) : 2018. 5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8. 4월 ~ 12월
  - 지역농협에서 수매농산물 포장재(PP마대) 일괄 구입, 농가 공급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728-3341~4)

## 13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

❖ 김영란법 시행(2016.9.28.시행)으로 인한 그 동안 포장 관행이 소규모 포장으로 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산물 유통업체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포장재비 지원함으로써 나아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480천매 · 240백만원
- 지원대상 : 제주산 신선농산물을 소포장 출하하는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
- 지원내용 : 신선농산물 유통을 위한 소포장재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소포장 재비 구매(제조) 단가의 50% 지원
  - 지원자재 : 포장규격 5kg이하의 골판지 및 플라스틱 상자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 2018. 1월
- 사업 지원 신청·접수(농정과) : 2018. 2월
-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확정(보조금심의위원회) : 2018. 3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8. 4월 ~ 12월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728-3341~4)

## [ 농지관리 분야 ]

### 1 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농업 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

#### □ 지원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신청 : 매년 12월~1월
- 신청대상
  - 신청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1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기타자금(홈페이지 개발, 농기계 구입비 등)
  -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5년 이내 사업 추진시 최대 3억원까지 융자지원(상환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금리 : 고정2%)

#### □ 신청방법 및 절차

- 읍·면·동 : 사업신청 접수( '17.12~ '18.1.30) → 제주시 농정과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도 제출( '18.2.28) →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3.5.~3.19.) → 도 : 추천대상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보고(3.28.)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4.1~)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농지관리담당(☎ 728-3091~6)

## 2 2018년도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 ❖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시스템 개선 및 정예 인력 육성

###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신청 : 매년 12월~1월
- 신청대상
  - 신청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독립 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농업인
  - 사업 신청을 하는 읍·면·동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자
- 지원기간 및 내용

구분	지원 1년차 (2018.4 ~ 2019.3)	지원 2년차 (2019.4 ~ 2020.3)	지원 3년차 (2020.4 ~ 2021.3)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12개월)	90만원(12개월)	80만원(12개월)
독립경영 2년차	90만원(12개월)	80만원(12개월)	-
독립경영 3년차	80만원(12개월)	-	-

### □ 신청방법 및 절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접수) → 서류평가 후 추천 → 면접평가 및 후계농 선정심의회 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

☎ 업무 관련 문의처 : 농정과 농지관리담당(☎ 728-3091)

##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 1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이용일수 및 지원단가 확대

- ❖ 영농중단방지 및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가도우미 지원 일수를 50일에서 90일로,
- ❖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원단가를 60,000원에서 70,000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 '16년) 최대 2,160천원 → ( '17년) 최대 2,400천원 → ( '18년) 최대 5,040천원 과 같이 점진 확대 지원하여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 < 변경 사항 >

사업명	변경	지원일수 및 단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80%지원)	2017년	1일 60,000원, 50일 이내 최대 2,400,000원
	2018년	1일 70,000원, 90일 이내 최대 5,040,000원

## 2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변경

-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공고 제2017-295호에 의거하여 도내 국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 등의 무상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 ❖ '도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불필요 해진 바, 지원 대상자를 '도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농어업인'으로 변경하여 지원

### < 변경 사항 >

사업명	변경	지원대상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2017년	도내 거주 중인 농어업인 중 도내·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자
	2018년	도내 거주 중인 농어업인 중 도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자

### 3

## 2018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단가 현실화

❖ 발작물 재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원 단가 확대 지원

사업명	변경사항	2017년	2018년	비고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한도 상향	농가당 6백만원 (보조 3,600천원)	농가당 10백만원 (보조6,000천원)	
소규모 육묘장지원	지원단가 인상	60,000원/㎡당	① 65,150원/㎡당 ② 직접시공인 경우 - (㎡당) 자재대 51,720원 인건비 13,430원 범위내	단가 산출 기초 추가
	시공자격 현실화	유자격 시공업체	유자격 시공업체 + 농가 직접시공	
발작물 관수시설	지원단가 인상	310원/㎡당	357원/㎡당 - A형(1단,4m 간격) : 357원 - B형(2단,8m 간격) : 311원	단가 산출 기초 추가
채소비닐하우스지원	지원단가 인상	36,000원/㎡당	40,000원/㎡당	



## 4 조건불리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 지급단가 인상(안)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및 밭농업 직불제 2020년까지 매년 지급단가 인상(안)  
→ ha당 5만원 인상

○ 조건불리직불제 : ('17년) 농지 55만원/ha → ('18년) 60만원/ha,  
('17년) 초지 30만원/ha → ('18년) 35만원/ha

○ 밭농업직불제 : ('17년) 431,648원/ha → ('18년) 478,095원/ha

※ 농업직불제사업 예산비교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조건불리직불제	6,200,000	7,200,000
밭농업직불제	2,010,000	2,246,000

## 5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적립의무 폐지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개정추진  
- 마을공동기금 의무적립 → 희망하는 마을별 자율적립

○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마을에 한해 현행과 같이 마을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마을공동기금 미 적립 마을은 마을운영위원회 운영하지 않음.

○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마을은 마을발전계획서등 제출 면제

○ 마을공동기금 적립 미 참여자는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직접제출

※ 기존 적립기금은 소진시까지 현행 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한  
용도대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2017년 마을공동기금 적립금 내역

→ 6개 읍·면 87개 마을 1,619,000천원

## 6

#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

- ❖ 농업보조금 사업별 개별발주·신청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 ❖ 농업보조사업 통합홍보 및 신청기간 정례화로 농업인중심 사업 추진
- ❖ 사업 조기발주 및 사업기간 확보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로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 □ 추진방향

- 도·행정시·읍면동 보조사업 통합신청으로 농가편의 제공
- 매년 1월중 일반 농업보조금사업 통합신청 정례화
- 조기발주 사업 추진으로 농업보조사업 성과 극대화

###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매년 1월중
  - 집중홍보기간 : '18. 1. 5. ~ 1. 15.
  - 신청기간 : '18. 1. 5. ~ 1. 19.
- ※단, 세부사업의 단위사업 계획에 신청기간이 별도 정해진 경우 그에 따름
- 대 상 : 일반농업 보조사업 중 다수농업인, 농업법인 대상 사업
- 통합신청사업 현황 : 21개 사업(목록 붙임 1)
  - \* 도 12, 행정시 공통 3, 친서민농정시책 6

### □ 역할분담

- (도)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추진계획 확정·통보
- (행정시) 농업보조금 통합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사업 추진
- (읍·면·동) 농업보조금사업 통합신청 접수 및 홍보
- (농가) 농업보조금 통합사업 신청

#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 로드맵

< 업무흐름 >	< 시기 >	< 주요내용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계획 시달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계획 시달(' 17.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친환경농정과, 식품원예특작과, 감귤진흥과), 행정시</li> </ul> </li> </ul>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발굴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부서 → 친환경농정과(' 17.11.3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붙임 목록 검토 및 추가발굴 송부</li> </ul> </li> </ul>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안) 제출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안) 송부 : '17.12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시행사업 : 소관부서 확정 통보</li> <li>- 행정시 공동시행사업 → 도 소관부서 총괄조정</li> </ul> </li> </ul>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 확정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 확정 송부 : 소관부서 → 친환경농정과</li> <li>■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 확정 통보 : 도 → 행정시</li> <li>■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 제작 : '18. 1월중</li> </ul>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보조금 통합신청('18. 1. 5. ~ 1. 19.)</li> </ul>
↓		
사업대상자 확정	1월~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18. 2.월</li> <li>■ 사업예산규모 확정 및 예산 재배정 : '18. 2월말</li> <li>■ 읍·면·동 → 행정시, 대상농가('18.3월)</li> </ul>
↓		
보조금 교부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행정시·읍·면·동 → 대상농가('18.3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li> </ul> </li> </ul>
↓		
사업추진	4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읍·면·동·행정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공, 현장확인, 준공, 준공검사, 보조금 교부 등</li> </ul> </li> </ul>
↓		
사업완료 및 정산	4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행정시,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점검, 사업완료,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등</li> </ul> </li> </ul>

# 붙임 1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목록(도 전체)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문의처
<b>21개사업</b>			
①-1 안전농산물 (친환경-GAP) 생산기지 구축사업 - 생산기반 육성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2식</li> <li>· 지원내용: 생산위생기반유통/전처리시설 등</li> <li>· 지원기준 : 150백만원/ 개소당</li> </ul>	친환경농정과 710-3162
①-2 안전농산물 (친환경-GAP) 생산기지 구축사업 - 생산자단체 육성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 1식</li> <li>· 지원내용: 생산위생기반유통/ 전처리시설 등</li> <li>· 지원기준 : 210백만원/ 개소당</li> </ul>	친환경농정과 710-3162
② 친환경인증농가 소득기반조성 특별지원	친환경 인증농가 (조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823농가</li> <li>·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 자재,장비 등</li> <li>· 지원기준(농가당) - 유기농 1,000천원 - 무농약 700천원</li> </ul>	친환경농정과 710-3163
③ 농업환경개선 녹비작물재배지원  * 신청서 별도 양식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400ha</li> <li>· 지원내용: 녹비작물종자지원 (농가당 지원한도액 설정)</li> <li>· 지원기준(ha당) - 헤어리베치 60kg, - 녹비(청)보리 140kg, - 호밀 160kg</li> </ul>	친환경농정과 710-3163
④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친환경 인증 조직체 (5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2개소</li> <li>· 지원내용: 시설/ 장비 / 자재지원</li> <li>· 지원기준 : 개소당 99백만원 내외</li> </ul>	친환경농정과 710-3163
⑤ 제주형 밭작물 농기계지원	밭작물 생 산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20대</li> <li>· 지원내용: 채소정식기, 소형 트랙터(25마력이하)구입비 지원</li> <li>· 지원기준: 세부기준참조</li> </ul>	식품원예특작과 710-3143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문의처
⑥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지원	영농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3개소</li> <li>· 지원내용: 농작업대행용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부속장비) 구입비 지원</li> </ul>	식품원예특작과 710-3143
⑦ 곡물건조기 지원	생산자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5대</li> <li>· 지원내용: 곡물건조기</li> <li>· 지원기준: 세부기준 참조</li> </ul>	식품원예특작과 710-3143
⑧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지원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식품제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4개소</li> <li>· 지원내용: 노후장비교체 등 농산물 식품가공장비구입비 지원</li> <li>· 지원기준: 세부기준 참조</li> </ul>	식품원예특작과 710-3175
⑨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지원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2개소</li> <li>· 지원내용: HACCP 시설을 위한 설비 및 장비 구입비 지원</li> <li>· 지원기준: 세부기준 참조</li> </ul>	식품원예특작과 710-3175
⑩ 금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농수산물 금감하우스 재배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0.85ha</li> <li>· 지원내용: 노후화된 농수산물금감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li> <li>· 지원기준: 39,000원/㎡</li> </ul>	감귤진흥과 710-3263
⑪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농감협 작목반, 영농법인, 유통인 단체 소속 선과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12대내외</li> <li>· 지원내용: 소규모광센서선별기설치지원</li> <li>· 지원기준: 개소당 450백만원</li> </ul>	감귤진흥과 710-3272
⑫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 지원	농감협작목반, 영농법인, 유통인단체 소속 선과장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8개소내외</li> <li>· 지원내용: 노후선과시설교체 지원, 유통시설 장비교체지원</li> <li>· 지원기준: 개소당 40백만원 이내</li> </ul>	감귤진흥과 710-3272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문의처
⑬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 지원	노지 감귤원 재배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피복자재 및 점적관수시설 지원</li> </ul> </li> <li>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800천원/ha (토양피복자재 11,500 + 점적관수 6,300)</li> </ul> </li> </ul>	제주시 농정과 728-333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071
⑭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	과수 재배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li> </ul> </li> <li>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0천원/대</li> </ul> </li> </ul>	제주시 농정과 728-333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071
⑮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노지 감귤원 재배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원 방풍수 정비</li> </ul> </li> <li>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둥절단 17,600원/그루</li> <li>- 중간절단 25,000원/그루</li> </ul> </li> </ul>	제주시 농정과 728-333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071
<b>친서민 농정시책사업 (6개사업)</b>			
⑯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밭작물 재배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작지내 암반제거비용 지원</li> </ul> </li> <li>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당 200㎡ 이하</li> <li>- 7,000천원/개소 (보조한도 4,200천원)</li> </ul> </li> <li>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천원/㎡</li> </ul> </li> </ul>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문의처
⑰ 소형농기계지원	밭작물 재배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li> </ul> </li> <li>·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기종 1대</li> </ul> </li> <li>· 사업비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당 10백만원 이하 (보조 6백만원)</li> </ul> </li> </ul>	<p>제주시 농정과 728-3341</p> <p>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p>
⑱ 농가 보급형 소규모 육묘장 지원	밭작물 재배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5㎡ 이하 육묘장 시설비 지원</li> </ul> </li> <li>·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750천원/개소</li> <li>- 지원단가 65,150/㎡</li> </ul> </li> </ul>	<p>제주시 농정과 728-3341</p> <p>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p>
⑲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밭작물 재배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5㎡ 이하 소규모 저온 저장시설 설치비 지원</li> </ul> </li> <li>·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 16,500천원 (보조 9,900)</li> <li>(장비) 12,500천원 (보조 7,500)</li> </ul> </li> </ul>	<p>제주시 농정과 728-3341</p> <p>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p>
⑳밭작물 관수 시설자재지원	밭작물 재배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 지원 (개소당 1ha 이하)</li> </ul> </li> <li>· 지원기준(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70천원/개소</li> </ul> </li> <li>·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7원/㎡ 이하</li> </ul> </li> </ul>	<p>제주시 농정과 728-3341</p> <p>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p>
㉑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지원	밭작물 재배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하우스시설 지원</li> </ul> </li> <li>· 지원기준(농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50㎡ 이내</li> </ul> </li> <li>·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천원/㎡ 이하</li> </ul> </li> </ul>	<p>제주시 농정과 728-3341</p> <p>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p>